

#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,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양·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역량 향상과 생활 편의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서
- 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의 동의 및 보고)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(재계약)에 대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·운영

나. 위탁시설 개요

- 수탁법인 : (사)서울특별시 교통회관(교통연수원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38-10
- 운영일자 : 2017.06.01.~2020.02.29.
- 인력현황 : 18명(정규직 13명, 계약직 5명)

- 시설규모 : 면적 대지 1,650.1㎡, 건물 5,222.67㎡, 지상5층, 지하1층
-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- 위치도



- 다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03.01.~2023.02.28.)
- 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- 마. 소요예산 : 955백만원(동결)
- 바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
  -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근거
  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및 제12조(재계약)
    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4항(운영의 위탁)
  -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
    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은 2017년 6월부터 3년간 (사)교통회관에 위탁운영 하였음

- (사)교통회관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“A+”(84.93점)을 획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, 사업 활성화 개선, 사업성과, 만족도 평가 부분 등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임
- 또한, 1983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험 및 노하우가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음

### 3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의 동의 및 보고)제1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3. 18., 2009. 7. 30., 2014. 5. 14., 2019. 9. 26.>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4항(운영의 위탁)

**제10조(운영의 위탁)**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장은 1회에 한한다. <개정 2016. 1. 7.>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이연진 (☎ 2133-2327)